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법 개정으로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고,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하며, 예산을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등 세부사항 규정

2. 주요내용

가. 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지원(제29조)

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,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예우사업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협의하였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수행을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29조(장기등기증자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수행을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제29조~제30조. (생략)	제30조~제31조. (현행 제29조부터 제30조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31